

지식재산권과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Design Protection Laws

황 선 영(Hwang, Sun Young)*

ABSTRACT

As the economy and industry develop and the importance and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increase due to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becoming a major competitiveness of the country. Accordingly, advanced countries are trying to prepare transparent legal systems and policies to protect and secu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se fair legal systems and policies are to eliminate corrupt elements and factors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is the mental product of human intellectual creative activities and has property valu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are legally recognized and protected are call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industrial property rights and copyrights, and new technology fields that have recently emerged and are not classified by existing classification methods are classified as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Design Protection Act protects only the design involved in the movement of goods because it aims to contribute to industrial development as one of the typ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esigns that can be protected by the Design Protection Act are products that can be traded independently and produced repeatedly. As such, it is limited to the design protection of industrial concepts based on commodities, so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concept of design in a comprehensive sense including socio-cultural concepts.

Recently, non-examinationism, which is made in an effort to protect unregistered designs and shorten the design review period, has been expanding worldwide.

This study examined the concepts and typ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design protection laws, and examples of domestic and foreign design protection systems.

The case countries were Korea, the United States, the EU, Japan, and China, which account for about 90% of the world's design applications and make up the world's top five patent office partners, IP5. and design protection laws and compares design protection laws with the principal national definitions and requirements for the design to be protected, as well as its implications.

Key word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esign Protection Laws, Fairness

* 주저자: 우석대학교 패션스타일링학과 교수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식정보화 사회환경 속에서 지식재산권은 국가의 주요 경쟁력이 되어가고 있으며 지식 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경제적 가치가 커지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유형재산이 가치의 중심이었지만 지식기반경제가 도래하면서 지식이나 기술과 같이 형태가 없는 무형재산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국가들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확보하기 위해 공정한 법제도 및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디자인 산업에서의 지식재산권과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내용과 관련 사항들에 대하여 이론적 고찰을 하고 국내외 주요 국가들의 디자인 보호제도 사례연구를 통해 디자인보호제도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디자인보호법이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하여 디자인 창작을 장려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듯이 지식재산인 디자인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를 살펴보고 국가별 디자인의 성립요건과 등록요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디자인 권리생성과 보호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권과 디자인보호법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디자인보호법과 보호대상인 디자인에 대한 주요 국가별 정의와 요건 등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보호 목적에 따라 지식재산권은 산업체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디자인보호법과 관련된 산업체산권은 다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구분한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권과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이론적인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국내외 지식재산권 디자인보호제도에 대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전체적인 내용 요약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안(시사점)을 모색(도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분류, 디자인보호법과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의 정의 및 요건, 국내외 디자인 보호제도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와 기존 문헌자료 조사를 하였으며, 디자인보호법과 보호제도에 관련한 내용은 특허청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기타 국가법령정보 센터 및 국가 정책 보도자료도 참조하였다.

외국의 디자인 보호제도 관련 사례에 대한 국가선정은 전 세계 특히 출원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으로 하였다. 이는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디자

인 출원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이며 글로벌 지식재산권 제도 사용자와 대중에게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족된 세계 5대 특허청 협력체인 IP5(Intellectual Property)를 구성하고 있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분류

1) 지식재산권의 개념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知識財產權)은 발명과 상표, 디자인에 관한 산업재산권과 문학이나 미술 작품, 음악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으로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한다. 관련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화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 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두산백과 두피디아).

지식재산권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3호)이며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같은조 제1호).

즉, 인간의 지적 창작활동의 성과로 얻게 되는 정신적 산물로서 재산적 가치를 지닌 것을 지식재산이라 하고 이러한 지식재산의 소유 및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보호받는 재산권을 지식재산권이라고 한다. 이전에는 ‘지적재산권’이라고 칭하였다가 한국특허청(KIPO)에서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지재권’으로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현재는 ‘지식재산권’이 정식 용어지만 아직도 일부 법령에서는 ‘지적재산권’이나 ‘무체재산권’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유형적인 재산을 보호하고 권리를 부여하는 기존의 고전적인 재산권에서 벗어나 무형적인 지식, 즉 문화, 예술, 기술, 연구, 교육 등 인간이 창조한 모든 것들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부여한다. 즉, 인간이 창작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호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¹⁾’는 1967년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및 문학·예술작품의 보호를 촉진시키기 위해 1967년 설립 협약을 채택하였으며, 1970년 정식 발족을 거쳐 1974년 유엔전문기구로 격상되었다. 1883년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을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협약과 조직들이 설립되면서 이들을 총괄 관리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새로운 조약을 장려하고 회원국 및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조를 통해 전 세계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촉진시키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각종 협약들 사이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회원국 간의 행정적 협조를 도모하는 공동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9년에 세계지식재산기구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193개 회원국이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설립협약 제2조는 지식재산권을 “①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 ② 연출 예술가의 음반 및 방송, ③ 인간 노력의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④ 과학적 발견, ⑤ 산업의장, ⑥ 등록상표 서비스마크 상호 및 기타명칭, ⑦ 부정경쟁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개념이다(임광현, 2010:111).

2) 지식재산권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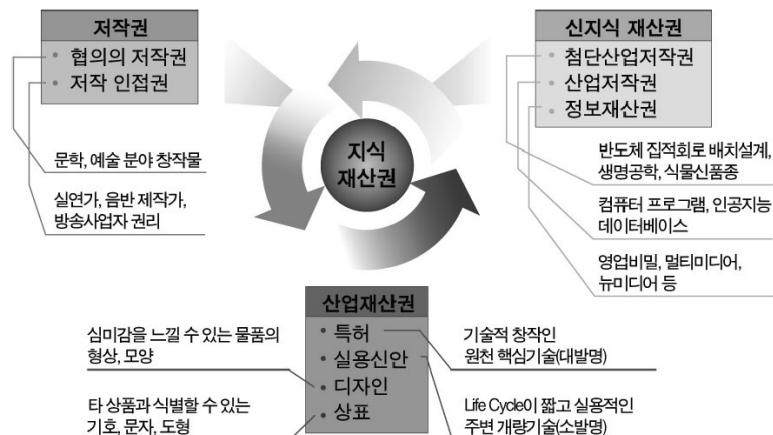
지식재산권은 보호 목적에 따라 3가지 분야로 분류되는데, 산업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대상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산업재산권’, 문화예술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대상에 권리를 부여하는 ‘저작권’, 신기술분야의 발전에 권리를 부여하는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분류는 <그림 1>과 같다.

지식재산권은 기존에 산업적, 영업적 소유권인 ‘산업재산권’과 예술적, 문학적 소유권인 ‘저작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왔으나, 최근 정보기술 혁신에 따라 새롭게 등장해 기존 분류 방식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신기술분야 관행에서는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신지식재산권’은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생명공학, 데이터베이스, 인공지능, 영업비밀, 뉴미디어 등 첨단산업정보 및 신기술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은 문학, 예술, 과학작품, 산업활동 등 인간의 지적 창작 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모든 무형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라고 할 것이다(송영식 외, 2005; 정경원

1)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1873년에 열린 세계무역박람회를 통해 발명의 국제적 보호가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박람회 참가국들은 1878년 파리에서 국제특허회의를 개최해 지적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에 인식을 함께 했고, 이후 파리에서 1883년 3월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을 채택하였다. 파리협약의 동맹국들은 산업재산권제도가 국제제도로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 내부기관인 국제사무국을 설치하였으며, 그 후 여러 개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약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를 협약을 총괄하는 국제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70년 WIPO를 만들게 되었다(임광현, 2010:112).

외, 2008; 윤선희, 2009; 임광현, 2010).



〈그림 1〉 한국 지식재산권의 분류²⁾

(1) 산업체재산권

산업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의 발전을 위해 도입된 만큼 상표를 제외하고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추어야 한다. 발명에 대한 특허, 산업디자인 및 지리적 표시 등을 포함하는데 산업체재산권은 <표 1>과 같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로 구분한다. 그리고 각 권리를 위한 법률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이 있다.

〈표 1〉 산업체재산권의 구분

구분	내용
특허권	기술적 창작으로 고도화한 원천, 핵심기술(대발명)
실용신안권	물품의 형상구조에 관한 실용성 있는 개량 기술(소발명·고안)
디자인권	물품의 모양, 색채 등 심미감을 주는 창작 작품
상표권	다른 상품과 식별 가능한 도형, 기호, 문자 및 입체적 요소들의 결합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화한 물품의 원천이나 핵심기술(대발명)을 말한다. 산업체재산권 중 가장 전형적이고 경제적 비중이 큰 '특허권'은 기술적 창작에 대한 특허 발명을 독점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특히 대상인 '발명'에 관해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독점 배타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권리보호를 하고 있다(최영옥, 2003:93; 이경은, 2015:267).

2) 정경원, 이주명, 디자인경영 10포인트, KIDP, 2008. p.203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에 관한 실용적인 가치가 있는 개량기술(고안)을 말하며 특허의 보호대상은 발명이며 실용신안권의 보호대상은 고안이다.

특허는 방법, 물질, 미생물의 발명, 생명공학이 모두 포함되는 발명인데 반해,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나 조합에 한정되므로 물품에 대한 고안 정도에 머물게 된다. 기술적 사상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특허와 실용신안은 큰 차이가 없어 구분의 모호성으로 거의 같은 등급으로 취급되기도 하지만 특허는 권리존속기간이 20년인데 반해, 실용신안은 10년이라는 차이가 있다(신계옥, 2009:283; 이경은, 2015:267).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데, 디자인권을 갖게 되면 타사의 모방에 의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사업 자금 신청 시 금융업체나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타 업체보다 우월한 혜택과 대우를 받을 수 있다(KIPO, 2008:77; 채승진 외, 2010:121).

상표권은 상품의 명칭을 보호해주는 권리로 상표법 제 1조에서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는 일정한 조건 하에 등록이 가능하며 상표 등록을 통해 상표권이 발생하고, 상표권은 상표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권리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타인의 상품과 식별될 수 있도록 사용되는 표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다(황우선, 2012:337; 이경은, 2015:267).

(2) 저작권

저작권(Copyright)은 음악, 미술, 시, 소설 등 법이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그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복제, 공연, 전시, 방송 또는 전송 하는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임광현, 2010:115).

〈표 2〉 저작권의 구분

구분	내용
저작재산권	저작에 기인하는 재산적 권리 · 복제권, 전시권, 배포권, 공연권, 방송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전송권 · 저작자 사후 70년간 존속
저작인격권	저작자의 일신 전속적인 권리 ·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공표권 · 저작자의 사망과 함께 소멸
저작인접권	저작물의 실연·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실연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 실연, 음반, 방송 등을 한 때 다음 해부터 50년간 존속

자료: 김종균·장호익(2011:29)

저작권은 <표 2>와 같이 구분할 수 있으며, 예술이나 학문에 대한 정신적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로써 보호 대상인 저작물은 창작자의 정신노동의 산출물이며 창작자의 인격에 바탕을 두고 있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저작권은 인격적인 권리를 포함해 공공성이 강하고 보호기간이 한정된다는 점에서 재산권과 다른 특수한 보호와 규제가 필요한 분야이므로 지식개산권의 영역에서도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양초산, 2004:30; 이경은, 2015:266).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하며, 문학작품(시·소설·각본), 미술품, 그림, 사진, 조각, 건축, 작곡, 연극, 영화, 춤, 논문, 강연, 지도,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저작물은 표현형식, 존재형식에 따라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등으로 구분된다.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갖기 위해서는 문학, 예술, 학술의 범위에 속해야 하지만 예술, 학술적 가치가 탁월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상이나 감정의 구체적 표현(색채나 언어 등에 의해 외부로 표현되어 객관적으로 존재할 것)이어야 하며, 감정이나 사상 등이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김종균 외, 2011:29-30; 이경은, 2015:266).

(3) 신지식재산권

신지식재산권이란 정보기술의 혁신에 따른 신기술의 등장으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으로 분류가 어려운 분야들이다. 신지식재산권은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권, 생명공학 기술권 등 ‘첨단산업재산권’과 인공지능,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산업저작권’ 및 영업비밀 보호권, 멀티미디어, 뉴미디어와 같은 ‘정보재산권’으로 구분된다. 이외에도 만화영화 등의 주인공을 다양한 상품에 적용하여 판매할 수 있는 캐릭터, 독특한 형태와 색채를 가진 클라병, 트럭의 외관과 같은 독특한 물품의 이미지인 Trade Dress³⁾. 프렌차이징 등도 신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포함되기도 한다(이상영, 2013:547-548; 이경은, 2015:267). 신지식재산권의 구분은 <표 3>과 같다.

<표 3> 신지식재산권의 구분

구분	내용
첨단산업재산권	생명공학 기술권,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권
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인공지능 등의 소프트웨어권
정보재산권	영업 비밀 보호권, 멀티미디어, 뉴미디어권
기타	프렌차이징, 캐릭터, 인터넷 도메인 네임, Trade Dress, 색채 상표, 업체 상표, 맛소라냄새 상표 등

3)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지식재산권 용어로, 디자인 특히 중 하나다. 상품 외관이나 포괄적이고 시각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모양과 크기, 빛깔 등을 가리킨다. 제품 포장이나 용기, 제품 자체의 모양, 크기나 색채 등 제품 고유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여러 가지 복합 요소를 통칭한다(ICT 시사 상식 2017).

2. 디자인보호법과 디자인 정의와 요건

1)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디자인보호법 제1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을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창작자에게 디자인 보호에 관한 이익을 주고, 공중에게는 디자인 이용에 관한 이익을 줌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고 이로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자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가진 산업입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노태정 외, 2009:102).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을 창작한 자에게 그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권리를 부여하고 디자인을 창작자는 그 디자인 권리를 소유할 수 있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디자인보호법 제3조제1항). 다시 말해, 디자인 창작자가 디자인 창작물에 대한 디자인 등록출원을 통해서 디자인권이라는 독점베타권을 부여받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제3자에게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그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결과, 디자인 창작자의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고 물품의 수요 증대에 이바지하여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을 창작한 디자이너의 입장뿐만 아니라 이를 합법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제3자의 입장을 함께 고려하여 상호 조화를 이끌어내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림 2〉 디자인에 관한 지식재산권 유형. 출처: 김웅, 2015:23

디자인 창작물은 여러 법률에 의해 다양한 권리로 보호될 수 있는데 <그림 2>를 살펴보면, 자동차에 관한 디자인 창작물에 있어, 자동차의 기술적 사상 중에서 고도한 것, 즉 브레이크 기능을 향상시키는 시스템 기술, 연비 향상 기술 등은 핵심기술이기에 특허권으로 보호될 수 있고, 기술적 사상 중 고도하지는 않지만 실용성이 개선된 개량기술, 즉 의자 높낮이 조절 기술, 효율적인 캠 훌더 기술, 사이드미러의 회전 기술 등은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 자동차의 전체적인 외관 및 일부 외관에 관한 권리는 디자인권으로 보호될 수 있고, 자동차의 명칭은 상표권으로 보호된다. 그러므로 디자인 창작물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권리를 통해 포괄적으로 보호될 수 있어서, 디자인 창작물에 내포된 여러 가치에 따라 다양한 권리로 세밀하게 보호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김웅, 2015:23).

디자인보호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해 먼저 출원한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주고 있다. 이는 독립적 창작물을 등록을 통해 보호하는 특허적인 방법으로 디자인 출원을 신청한 디자인은 특허청의 심사를 통해 등록되며 이를 통해 디자인권을 획득한다. 심사는 디자인등록요건의 구비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주의와 강한 유행성과 짧은 라이프사이클을 가진 제품에 한하는 무심사주의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채승진 외, 2010:122; 안선우 외, 2009:58).

2)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 정의와 요건

(1)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정의

디자인보호법에서 명시한 디자인의 정의를 살펴보면,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 자체 및 화상을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視覺)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과거에는 ‘의장’이라고 용어로 사용되었지만 2004년 법 개정 이후 용어가 ‘디자인’으로 변경되었다. 사회 및 산학관계 기관 등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와의 통일성이 필요했으며 이에 따라 ‘의장법’은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었다(채승진 외, 2010:121).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회·문화적 제현상으로 이해하여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는 산업계, 학계의 추세와 달리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산업적 생산에 의한 ‘물품의 미적 외관’으로 의미를 한정하고 있다. WIPO 또한 산업디자인을 “물품의 장식적 또는 미적인 양상을 의미하고, 디자인은 물품의 표면 또는 형태와 같은 3차원적 특징과 패턴이나 선, 색채 같은 2차원적 특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의한다(진선태, 2011:254).

그러므로 학제적, 실무적으로 쓰이는 디자인 개념은 문화적, 사회적으로 의미영역을 넓혀 가면서 사회혁신을 위한 창조적 수단으로 확장되어가는 개념인데 반해, 디자인보호법상 정의는 산업적 생산물에 기반해 이에 표현된 외관의 특징을 디자인으로 보는 법의 취지에 맞게 한정시킨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진선태, 2011:255).

(2)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요건

국내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 요건은 <표 4>와 같이 디자인 성립요건과 등록요건으로 나누어진다.

<표 4> 디자인의 성립요건과 등록요건

구분	요건	특징
디자인 성립요건	물품성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
	형태성	물품의 특정한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시각성	육안에 의해 식별가능한 상태
	심미성	일반적 수준의 시각적 미감
디자인 등록요건	신규성	공지, 실시, 게재, 공중이 이용하지 않은 것
	창작성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닌 것
	공업상 이용가능성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것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는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을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인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및 심미성을 갖춰야 하고, 이 4가지 요건을 디자인의 성립요건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갖춘 디자인인 경우만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하나인 디자인권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갖춘 객체만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설정등록되기 위해서는 디자인 성립요건이 디자인등록요건의 전제사항이라는 의미이다. 출원디자인은 종래에 이미 알려진 디자인에 비해 새로운 미감이 나타날 수 있어 객관적 창작성을 갖추어야만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겠지만 디자인의 성립요건은 이러한 판단 이전에 먼저 갖추어야 할 요건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김웅, 2008:58).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의 유체동산”을 말한다. 디자인보호법은 궁극적으로 물품의 수요증대를 통해 산업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물품성은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을 성립하기 갖추어야 할 전제되는 요건이며 독립성, 구체성, 유체성, 동산성을 갖추어야 한다.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의 특정한 형상이나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형태’라고 하는데, 디자인의 조형요소와 거의 일치하는 개념들이지만 시각적 요소에 치중하여 정의된 것이다. 디자인의 동일 및 유사여부는 물품의 동일 및 유사를 전제로 하여 형태의 동일 및 유사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형태성은 물품성과 함께 디자인 성립요건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김웅, 2008:60; 진선태, 2011:257).

시각성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형적 측면이 아니라 가시상태를 뜻한다. 시각적 경험을 중시하지만 기능, 콘셉트, 사용자경험 등 비시각적 요소도 존재하는 디자인 분야와는 달리 디자인보호법은 오직 시각적으로 판별 가능한 디자인만을 보호 객체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시각성의 여부는 물품 자체로 표현되는 물품성이나 형태성과는 다르게 관찰자의 시각에서 요구되는 요건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김웅, 2008:60; 진선태, 2011:257).

디자인보호법상 요구되는 심미성은 창작자의 높은 수준의 미감이 아닌 일반적 수준에서 시각적인 미감을 일으킬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능, 작용효과를 주목적이거나 미적인 효과나 구성력이 없는 디자인은 성립요건에 위배된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조형이 주는 미적 경험이 중요한 요소이지만 디자인보호법에서의 심미성은 성립요건상 최소한의 기준으로만 적용되는 개념이다(진선태, 2011:257).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에 해당할 때 디자인 등록을 할 수 있고, 일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등록출원한 디자인의 등록이 결정되면 당해에 디자인이 등록된다. 그리고 디자인이 등록되면 등록디자인이 되어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김종균 외, 2010:32; 이경은, 2015:268).

디자인의 등록요건으로는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 신규성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출원 전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및 이에 유사한 디자인”이 아닌 것을 말한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창작성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닌 것을 말한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3호2항). 그리고 공업상 이용가능성은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한 물품을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⁴⁾

III. 사례연구

1. 국내 지식재산권의 디자인보호제도

한국은 정보지식산업의 발전 및 과학기술의 고도화를 겪으며 무형의 지적 상품이 자산으로서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체계적인 디자인 보호법을 갖추고 있으며 디자인 보호체계는 디자인 성립 및 등록 요건

4) 공업적 생산방법이란 원자재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는 것. 즉, 2차 산업을 지칭한다.

과 같은 다양한 절차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단기간 내에 실질적 디자인 보호를 하고자 하는 창작자와 기업들의 디자인 등록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한국의 디자인보호법은 먼저 출원한 창작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독립적 창작물을 등록 보호하는 특허적인 방법이다. 출원 신청된 디자인은 특허청의 심사과정을 등록과 디자인권의 획득이 이루어진다. 심사는 디자인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심사주의와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이 짧거나 유행성이 강한 제품에 한해 무심사주의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채승진 외, 2010:122).

한국에서 디자인 보호법으로 디자인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디자인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받은 디자인만 보호받을 수 있다. 등록을 하지 않은 디자인은 디자인 보호법과 보호제도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한국에서 디자인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적 장치로는 디자인보호법과 특허법, 실용신안법,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있다. 한국의 산업체재산권과 디자인 보호지원에 대한 법률적 특성은 <표 5>와 같다.

<표 5> 한국의 산업체재산권과 디자인 보호지원 법률

법률	목적	기간	특징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 창작 장려.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도모. 산업발전에 기여	20년	창작 물품 보호. 사익적 측면 디자인 상표화 기능
특허법	발명 장려 및 보호. 이용도모 기술발전의 증진. 산업발전에 기여	20년	기술적 사상의 창작. 공익적 측면 심사청구제도
실용 신안법	실용적 장려 및 고안 보호. 이용도모 기술발전 증진, 산업발전에 기여	10년	공익적 측면, 특정 형태 물품 대상 선등록제도, 심사청구제도, 기술평가제도
상표법	상표보호로 업무상 상표사용자의 신 용유지 도모, 산업발전에 기여 수요자의 이익 보호	10년 갱신	공익적 측면, 상표 디자인화 기능 물품 부착 상표 보호
저작권법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 저작자의 권리와 인접하는 권리 보호 문화와 관련 산업 향상발전에 기여	사후 70년	시각·청각 표현 요소 보호 응용미술저작물 대상 포함 보호 창작 직후 권리발생
부정경쟁 방지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국내 많이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 부정사용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타인 영업비밀 및 침해 행위 방지		타인의 제작 상품 및 모방한 상품 보호 손해배상청구·신용 회복조치·금지청구 가능. 주지 및 저명 시 보호가능

출처: 채승진 외, 2010:126

디자인보호법에서 디자인의 성립요건으로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이 있고, 절차적 등록요건으로는 신규성, 창작성 그리고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 디자인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권리가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디자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디자인

보호법 제91조).

2. 국외 지식재산권의 디자인보호제도

각 국가별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정의는 <표 6>와 같이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나라의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정의는 공통적으로 물품을 전제로 이에 내재된 패턴, 색채, 선 등 2차원적 요소나 질감, 형상 등 3차원적 요소들이 결합해 표현되는 외관적 특징을 의미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각 나라마다 디자인 등록제도를 통해 산업디자인을 권리로 인정하고, 디자인 행위로부터 나온 산업적 생산에 의한 물품과 제품에 적용된 본래의 장식과 비기능적인 특징을 보호하기 위한 것”⁵⁾으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자인이 원래 기능적 특징이 아닌 형상이나 장식만을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특허나 실용신안과 다르게 구분되는 디자인 정의로 특징된 것이다. 디자인의 이러한 물품성 규정으로 인해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이란 용어와 함께 보호대상 용어가 널리 사용된다. 디자인은 물품에 내재되거나 생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실체이기 때문에 보호대상은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된다.(진선태. 2011:255).

<표 6> 국가별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 정의⁶⁾

국가	용어	디자인의 정의
한국	디자인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일본	의장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의 형상 ·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미국	design	제조물로 구성되거나 제조물에 부가된 시각적 장식적 특징으로 구성된 것 외관에 의해 명시되므로 디자인의 대상은 물품의 모양·형태, 물품에 적용된 외관장식이나 형태와 외관장식의 결합에 의한 것을 의미
영국	design	형상, 선, 윤곽, 색채, 질감, 물품의 재질이나 그 장식 등의 형태에서 발생하는 물품의 전체 또는 부분의 외관
유럽 공동체	design	물품 그 자체 및 그 장식의 선, 윤곽, 형상, 색채 및 재료의 형태로부터 발생하는 물품의 전체 및 부분의 외관
프랑스	design et models	design은 색과 선의 결합이 물품에 평면상 배치되는 것을 말하며 Models은 색과 선의 결합이 물품에 입체적 형상으로 배치되는 것
중국	외관설계	물품 생산물의 형상 · 도안 · 색채 및 그들의 결합에 의해 미관을 나타내고 공업적 면에서도 적절히 활용 가능한 새로운 디자인을 총칭

출처: 특허청, 2010; 진선태, 2011:255

5) WIPO, (1997).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theory and practice. Kluwer law international Ltd., 221.

6) 특허청. (2010). 주요국의 디자인보호대상 및 보호법위관련 자료집.

디자인보호제도와 관련된 국제조약은 베른협약, TRIPs협정, 로카르노 협정이 있다.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은 문학·예술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1886년 스위스 베른에서 체결된 세계 최초의 다자간 협약으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체결되었다(위키백과). 베른협약은 제5조 제2항에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보호국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베른협약). 즉,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와 관련해 기본조약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⁷⁾.

TRIPs협정은 저작권과 디자인권, 상표권,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을 통합해 규정한 최초의 다자간규범이다. TRIPs협정에 의하면, 다른 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을 권리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규정한 권리 행사의 방법 및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창작물은 국경의 장애를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TRIPs협정은 각국 사이의 관행과 법률을 조화하고 통일하는 국제적인 규범이라 할 수 있고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가입한 국가들은 당연히 적용을 받는다(윤혜정, 2022:27).

IP5(Intellectual Property)는 전 세계 특허 출원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의 5개 특허청으로 구성된 협력체제로서 2007년 출범하였다. IP5는 세계 및 국내 시장에서 디자인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허청간의 협력강화를 통해 각국의 상이한 특허제도를 조화시켜 글로벌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식재산 사용자와 대중에게 공동 출원 양식, 영어와 다른 언어들 간의 기계 번역, 최신의 공통 인용 문헌정보 제공, 특허정보 정책, 특허분류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특허청). 또한 2015년에는 5개 국가 지식재산청간의 디자인분야 협의체인 IID5 (Industiral Design 5 Forum)로 출범하여 디자인제도에 관한 상호 정보교환 및 협력을 통해 글로벌 제도개선 및 조화 추구를 위해 논의하고 있다(국세청).

1) 미국

미국에서의 디자인보호제도는 디자인특허와 저작권 그리고 상표법의 접근방법을 이용한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⁸⁾로 이루어진다.

미국법상 디자인권은 특허권의 일종으로 특허에 관한 규정과 법률을 따른다.⁹⁾

7) 베른협약은 지식재산권의 보호 대상,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권리의 제한 및 예외, 보호기간 등에 관하여 해당 협약에서 정한 것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를 규정해야 하는 의무는 없더라도 최소한 각국의 법에 입법화하여 보호해야 한다(베른협약 제19조; 윤혜정, 2022:27).

8) 제품, 포장, 접두 디자인의 시각적 형태를 하나의 상표로 보고 그 안에 내재된 색상, 그래픽 디자인, 향기, 3차원 형상 등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이는 디자인을 상표법으로 해석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개선해온 미국 판례상의 법리이다. 이 법리는 식별력 있고 출처 확인이 가능한 역할을 하는 제품 이미지나 판매까지 모든 측면을 보호한다(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Trade_dress).

미국특허법 171조는 “제조물품을 대상으로 한 신규,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디자인을 창작한 자는 본법의 조건 및 요건에 따라 그에 대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미국특허법 35 U.S.C)라고 특허법으로 보호되는 디자인을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미국특허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성립요건은 제조물품성과 장식성이다. 여기서 제조물품성은 ‘제조물품의 디자인’이 아니라 ‘제조물품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을 말한다.

디자인의 등록요건으로는 미국에서 알려지거나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인 신규성(novelty), 동일 분야의 종사자나 전문가가 공개된 기술을 쉽게 변형할 수 없는 비자명성(non-obviousness), 자연물이나 주지된 대상을 본뜨지 않은 독창성(originality)을 충족하여야 한다(특허청, 2012:79).

미국은 자유경쟁을 통해 독점을 방지하고 창작자 우선주의의 ‘선발명주의’ 시행을 통해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다. 미국의 디자인 특허는 일반 특허법에 속해 있고 등록을 통해 디자인을 보호하는 제도이고 주요 대상은 실용적 기능을 갖추고 있는 물품에 장식을 가미한 객체이다. 그 외 디자인을 통해 소폭 변경된 제품의 보호를 위해 저작권과 디자인을 상표법으로 판단한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와 같은 보완장치가 존재하지만 디자인이 실용적 기능과 분리돼서 존재할 수 있는지의 판단 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유영선, 2005:659; 채승진 외, 2010:116). 디자인의 권리 보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4년이다.

2) 유럽연합(EU)

유럽에서 디자인 창작물은 유럽공동체디자인법(Community Design) 하에서 규율된다.¹⁰⁾ 유럽공동체디자인법은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통용되는 의장권으로 2002년에 시행되었으며 규정에서는 등록절차를 필요로 하는 등록공동체디자인권(Registered Community Design; RCD, 2003)과 등록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미등록공동체디자인권(Unregistered Community Design; UCD, 2002)의 2종류의 권리로 분류하고 있다(차상육, 2011:4).

등록공동체디자인권(RCD)은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OHIM)이나 가맹 각국의 중앙공업소유권청에 출원, 등록한다. 권리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부터 5년이며 5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25년까지 보호된다. 미등록공동체디자인권(UCD)은 공중이 의장을 이용하는 최초 당일부터 출원절차나 방식 없이 즉시 발생한다. 권리의 보호기간은 유럽공동체 내에서 공중이 최초로 이용하는 당일부터 3년이다(두산백과).

등록공동체디자인권은 신규성과 독특성을 보호 요건으로 하고 있고, 미등록공동체디자인

9) 미국의 법률(U.S.C.) 중 특허를 규율하는 법은, 35번째 법률(35 U.S.C.)이며, 이것을 미국특허법이라 칭한다(특허청, 2012:73).

10) 유럽 공동체 디자인권의 효력은 유럽공동체 가입국에 전역에 미치지만 각 국가에 대한 개별적인 디자인등록도 가능하다.

권은 제3자의 무단복제를 막기 위해 신규성을 보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2종류의 권리제도를 채용한 것은 시장에서의 제품수명이 짧고 등록의무가 없는 간편한 제도를 바라는 기업과 시장에서의 제품수명이 길고 법적으로 확실한 효력을 지닌 제도를 원하는 기업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차상육, 2011:5)

유럽연합의 디자인보호제도는 현행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의 해석과는 달리 보호대상인 디자인에 관해 물품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디자인 보호체계는 미등록 디자인을 보호함으로써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등록 절차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디자인 보호를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일본

일본의 ‘의장법’을 통해 디자인보호를 하고 있으며 의장법은 2019년에 개정을 하였는데 기본 방향은 디자인권의 보호 강화에 있다. 일본 법률상 ‘의장법’으로 표기하지만 의장법 법문을 인용하는 이외에는 ‘의장’이라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디자인’으로 표기한다(최기성, 2020:184).

일본은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을 통해 디자인보호를 하고 있다. 일본의 의장법에서 의장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형상, 모양 또는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의장법 제2조제1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서는“전항에 있어서 물품의 부분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는 물품의 조작(당해 물품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것에 한한다)의 이용에 이바지 하는 화상으로서, 당해물품 또는 이것과 일체로 하여 이용되는 물품에 표시된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의장, 즉 디자인의 성립 요건은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그리고 심미성이다.

디자인 등록요건은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공업상 이용가능성으로 신규성은 객관적인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하며 창작비용이성의 의미는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을 창작하여 출원하고 신규성이 인정되더라도 나아가 그 의장이 창작력을 구비하고 있는 것을 요구한다.”(의장법 제3조 제2항). 그리고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갖는다는 것은 공업적 수단에 따라 양산되는 물품이 의장법의 보호대상이라는 것이다(특허청, 2012:128). 일본의 디자인법은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물품 전체가 아닌 물품의 부분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일본 디자인보호법은 몇 가지 차이점¹¹⁾을 제외하고 한국 디자인제도와 매우 유사하다. 일

11) 국내외에서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것을 인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모든 출원디자인에 대해 심사등록주의를 채용한다는 점, 자신이 원래 창작한 기본 디자인과 유사한 자신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기본 디자인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호한다는 점, 디자인권의 침

본의 디자인보호제도는 보호요건이 까다롭고, 심사의 지연, 절차상의 복잡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순수미술품이나 미술공예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디자인이 미술공예품의 용도로 창작이 되었다면 저작권법으로 한정적 보호를 한다. 또한 1993년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면서 “타인의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혹은 양도 또는 대여행위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수출하거나 혹은 수입하거나 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디자인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디자인보호협회는 미등록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기탁제도¹²⁾’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디자인권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채승진 외, 2010:117). 디자인의 권리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5년이다.

4) 중국

중국은 1984년 산업재산권으로서의 디자인 보호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특히, 실용신안, 디자인을 전리라고 통칭하여 전리법이라는 통합된 법률로 규율하였다(특허청, 2015:123). 중국에서 디자인 창작물은 미국과 유사하게 중국 특허법 내의 디자인 특허로 규율된다. 중국의 특허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은 “제품의 형상, 모양 또는 그 결합, 또는 색상과 형상, 모양의 결합에 대하여 행한 미감이 있고 산업상 이용에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을 가리킨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전리법 제2조).

이에 따르면 디자인의 성립요건이 되는 것은 물품성, 형태성, 심미성 그리고 산업상 이용성이다. 전리법상 물품성과 형태성은 한국의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성 요건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심미성은 예술적인 관점이 아니라 공중이 디자인을 수용할 수 있고 공공질서와 사회 미덕에 저촉되지만 않으면 그 디자인은 심미성을 갖춰졌다는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산업상 이용성은 산업상 대량복제를 통해 디자인의 대량생산이 가능함을 의미한다(특허청, 2015:126). 반드시 물품을 전제로 하는 점은 한국과 매우 유사하지만, 보호대상으로 부분디자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은 큰 차이가 있다(김웅, 2015:197). 디자인 등록에 대해 중국은 무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디자인 등록출원은 초보심사를 통해 거절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등록된다. 등록디자인은 출원일부터 10년 동안 보호된다.

IV. 결론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경제적 가치가 커지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

해죄가 비친고죄라는 점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윤선희의 앞의 연구보고서, 2002:88).

12) 디자인 등록 출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디자인을 기탁받아 보관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 과거에는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유형재산이 가치의 중심이었지만 지식기반경제가 도래하면서 지식이나 기술과 같이 형태가 없는 무형재산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국가들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확보하기 위해 법제도 및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해외의 디자인보호제도 사례를 보면 각 나라의 산업적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보호제도를 제정 및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나라의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정의는 공통적으로 물품을 전제로 이에 내재된 패턴, 색채, 선 등 2차원적 요소나 질감, 형상 등 3차원적 요소들이 결합해 표현되는 외관적 특징을 의미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규정의 해석은 각 나라의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자유경쟁을 통해 독점을 방지하고 창작자 우선주의의 ‘선발명주의’ 시행을 통해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다. 미국의 디자인 특허는 일반 특허법에 속해 있고 등록을 통해 디자인을 보호하는 제도이고 주요 대상은 실용적 기능을 갖추고 있는 물품에 장식을 가미한 객체이다. 유럽연합(EU)의 디자인보호제도는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넓히고 미등록 디자인을 보호하여 등록절차 없이 간편하게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다. 일본의 디자인보호제도는 한국과 유사하며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물품 전체가 아닌 물품의 부분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중국은 디자인등록에 대해 무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 취득한 디자인 권리만 인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등록된 디자인만 디자인보호법과 보호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보호 범위를 등록된 디자인에만 한정하기에 범위의 확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분디자인제도의 도입이나 무심사 등록제도 등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해 디자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미등록 디자인을 보호하고 디자인 심사기간의 단축을 위한 노력으로 하는 무심사주의가 확대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수요 증대를 통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재화의 이동에 관여하는 디자인만을 보호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독립적으로 거래할 수 있고, 반복 생산이 가능한 물품이다. 이처럼 보호범위를 물품 성에 기반한 산업적 개념의 디자인 보호에만 한정하고 있기에 사회문화적 개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서의 디자인의 개념확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식재산인 디자인을 보호하고 권리확보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법 제도 및 정책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웅. (2015). 「디자인보호법 이론과 실제」. 대전: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노태정 · 김병진. (2009). 「디자인보호법」. 세창출판사.
- 송영식 · 이상정 · 황종환. (2005).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 양혜림 · 최호석. (2022).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특허청.
- 윤선희. (2009).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 정경원 · 이주명. (2008). 「디자인경영 10포인트」. 한국디자인진흥원.
- 최경수. (2001). 「국제지적재산권법」 한울아카데미.
- 윤혜정. (2022). 캐릭터의 지식재산법적 보호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김웅. (2008). 디자인보호법. 발명특허. 33(2).
- 김종균 · 장호익. (2011).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에 의한 디자인의 법적 보호 비교연구. 디자인학연구. 24(1).
- 신계옥. (2009). 디지털 시대 창조적 디자인과 지적 재산권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0(1).
- 안선우 · 채승진. (2009). 디자인보호법 비교분석과 디자인전문회사에서의 효과적 적용에 관한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9(4).
- 양초산. (2004). 패키지디자인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 윤내한 · 이상영. (2010). 한국디자인산업과 디자인보호제도의 비교고찰. 디자인학연구.
- 이경은. (2015). 디자인에서의 지식재산권 실태에 관한 연구. 브랜드디자인학연구. 13(2), 263-272.
- 이상정. (2012). 디자인 보호제도의 현황과 발전을 위한 제언. 산업재산권. 38.
- 임광현. (2010).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내외 주요 생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4(2).
- 진선태. (2011). 디자인과 디자인보호분야 사이의 통념차이. 디자인학연구. 24(3).
- 차상육. (2011). 유럽연합 디자인법에서의 미등록공동체디자인의 보호. 정보법학. 15(1).
- 채승진 · 안선우. (2010). 디자인 보호법 비교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3).
- 최승수. (2017). 디자인보호의 현실적 한계와 개선방안. 법률의지평.
- 황우선. (2012). 패션 산업에서의 지적재산권과 법적 보호의 문제점. 기업법연구. 26(1).
- KIPO, 중소기업을 위한 브랜드디자인 경영매뉴얼, KIPO, 2008, p.77.
- 특허청. (2008). 중소기업을 위한 브랜드디자인 경영매뉴얼.
- 특허청. (2010). 주요국의 디자인 보호대상 및 보호범위 관련 자료집.
- 특허청. (2012). 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에 따른 등록요건 및 권리범위에 대한 연구.
- 세계지식재산기구. <http://www.wipo.int>
- 특허청. <https://www.kipo.go.kr>
- 두산백과. <http://www.dooopedia.c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위키백과. <https://www.wikipedia.org/>

투고일자 : 2023. 06. 11

수정일자 : 2023. 06. 30

게재일자 : 2023. 06. 30

<국문초록>

지식재산권과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연구

황 선 영

경제와 산업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의 고도화로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가치성이 높아지면서 지식재산권은 국가의 주요 경쟁력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화된 국가들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확보하기 위해 투명한 법제도 및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한 법 제도와 정책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부패적인 요소와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인간의 지적 창작활동의 성과로 얻게 되는 정신적 산물로서 재산적 가치를 지닌 것을 지식재산이라 하고 이러한 지식재산의 소유 및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보호받는 재산권을 지식재산권이라고 한다. 지식재산권은 산업체재산권과 저작권, 그리고 최근 정보기술 혁신으로 새롭게 등장해 기존 분류방식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신기술분야와 관련된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은 지식재산권 유형 중 산업체재산권의 하나로서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재화의 이동에 관여하는 디자인만을 보호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독립적으로 거래할 수 있고, 반복 생산이 가능한 물품이다. 이처럼 물품성에 기반한 산업적 개념의 디자인 보호에만 한정하고 있기에 사회문화적 개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디자인의 개념확장이 필요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미등록 디자인을 보호하고 디자인 심사기간의 단축을 위한 노력으로 하는 무심사주의가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권과 디자인보호법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국내외 디자인보호제도 관련 사례를 고찰하였다. 사례 국가는 전 세계 디자인 출원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5대 특허청 협력체인 IP5를 구성하고 있는 한국,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으로 하였다. 그리고 디자인보호법과 보호대상인 디자인에 대한 주요 국가별 정의와 요건, 디자인보호제도 등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주제어: 지식재산권, 디자인보호법, 공정성

